

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5. 3. 16

나. 회부일자 : '95. 3. 16

3. 제안이유

-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전국을 단위로 자치복권의 공동발행을 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 및 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복권발행에 따른 제반업무추진 기구로서 협의운영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구 성 : 서울특별시, 5개 광역시, 9개도(15개 시·도)
- 조 직 :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
- 기 능
 - 복권발행 관련 사무의 대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
 -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
 - 복권의 판매 및 홍보, 기타 복권의 발행 및 사무관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등 협의
- 합의방식 : 자치단체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5. 검토의견

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(인)을 검토한 바, 이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책으로 전국을 단위로 자치복권의 공동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발행 승인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, 광역시 및 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 복권발행에 따른 제반업무 추진 기구로서 협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첫째, 구성에 있어서는

협의회는 서울특별시, 5개 광역시, 9개 도(15개 시·도)로 하고

둘째, 조직에 있어서는

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며

셋째, 기능에 있어서는

- 복권발행관련 사무의 대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
-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등에 관한 사항
-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기타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사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등을 협의 의결토록 하고

넷째, 협의방법에 있어서는

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 의결토록 했으며

다섯째, 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에 있어서는

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복권 판매액, 시·군·구수, 인구수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규약(인)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참 부

-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(안)